



2002년도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세 부 추 진 지 침

농산물의 포장화는 물류비용절감과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를 통한 생산자로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. 이번 호에 2002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바 농산물 포장화 촉진을 위하여 우리업체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갖도록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게재합니다.

조합 정보기술팀 제공

1. 목 적

-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 추진
-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신용·통명거래 정착
-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억제 및 유사도매시장과의 차별화 실현으로 공영도매시장 활성화 유도

2. 추진방향

- 규모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선별·포장비용 중점 지원
 -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단순 포장재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
- 표준바코드표시조직, 공동계산조직, 친환경·품질인증 농산물 우선 지원
- 유통량이 많으나 포장화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수확상차비 추가 지원으로 규격포장 출하유도
- 규격출하실적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여 차등 지원

3. 근거법령

- 농업농촌기본법 제31조(농산물의 유통개선)
-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조(유통정보화의 촉진)



4. 지원계획

(단위 : 천매, 백만원)

구분		'92~'98	'99	'00	'01예산	'02예산(안)	
산지유통전문 조직 등 지원	사업량	639,000	179,000	187,000	260,546	257,053	
	사업비	계	259,230	125,300	138,380	214,150	171,966
		국고	51,846	37,590	41,514	64,245	51,590
		지방비	51,846	12,530	-	-	-
		자부담	155,538	75,180	96,866	149,905	120,376
포장화우대품목지원	사업량				11,454	14,947	
	사업비	계				8,590	10,000
		국고				2,577	3,000
		지방비				-	-
		자부담				6,013	7,000

5. 2002 사업실시요령

가. 사업개요

(1)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지원

(가)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

- 농림부로부터 지정 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의 규격포장출하 농산물
 - 산지유통전문조직 :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사업중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의 정의에 따름
- 표준바코드표시·공동계산을 하는 생산자조직(농협, 작목반, 작목회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인)의 규격포장출하 농산물
 - 표준바코드표시 : 한국유통정보센터에 국제표준바코드(Kan Code, Ean Code)를 등록한 생산자 조직이 표준바코드를 부착하여 출하한 물량에 한함
- 친환경농산물인증(표시)/품질인증을 받은 규격포장 출하농산물(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)
 - 쌀의 경우, 친환경인증품 / 품질인증품 재배면적이 1,000평 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에 우선 지원

(나) 지원내용

-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비 일부보조
 - 지원대상 포장재 : 골판지상자, 그물망(스티커 포함), P.E대, P.P대, 지대
 - 겹포장 및 겹포장내의 속포장을 포함



-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선별비용 일부 지원

(2) 포장화우대품목 지원

(가) 지원품목

- 무, 배추, 마늘, 양배추

(나) 지원대상

- 생산자조직(농협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 등), 산지유통인 등

(다) 지원내용

- 농산물 규격포장 출하 시 포장재비 일부 보조
 - 지원대상 포장재 : 골판지상자, 그물망(스티커 포함), P.E대, P.P대
- 공영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에 규격포장 출하시 포장재비외에 수확상차비 일부 지원(양배추는 포장재비만 지원)

(3) 기타 생산자조직 지원

(가) 지원품목: 9개 품목범위내(포장화우대품목, 곡류, 두류, 축산물, 임산물 제외)

- 시·군별로 지원품목 범위 내에서 농관원과 농협이 합의 선정

(나) 지원대상

- 농산물을 규격출하 하는 생산자조직(농협, 작목반, 작목회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의 출하 농산물
 - 농협은 선별·포장시설 등을 보유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.

(다) 지원내용

-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비 일부보조(국고 30%)
 - 지원대상 포장재 : 골판지상자, 그물망(스티커 포함), P.E대, P.P대
 - 겹포장 및 겹포장내의 속포장을 포함

나. 지원기준 및 조건

(1)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지원(국고30%, 자부담7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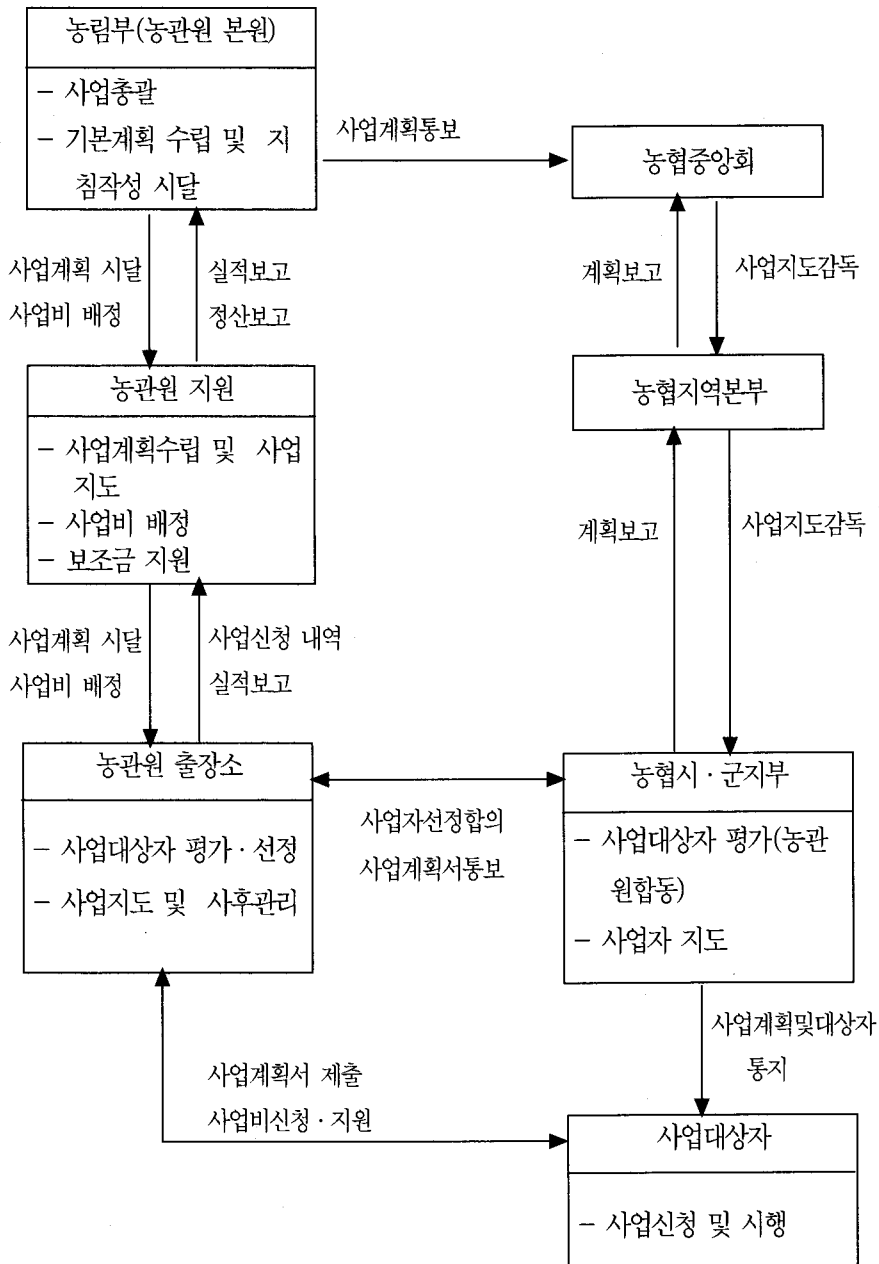
- 산지유통전문조직 / 표준바코드표시조직 / 공동계산조직 출하품목과 친환경농산물 인증(표시) / 품질인증품목은 생산자조직 등급 분류와 관계없이 신청하여 제작한 수량의 100%를 지원

(2)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(국고30%, 자부담70%)

- 규격출하 수량의 100%를 지원



《 사업시행 체계도 》





7. 2003년도 사업실시요령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농관원지원·출장소

-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별 『농산물규격출하사업계획서』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
 -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경작지 관할 농관원 지원에 제출

나. 신청자격 : 2002년도 신청자격과 같음

다. 대상품목 : 2002년도 대상품목과 같음

라. 구비서류 : 『농산물규격출하사업계획서』

마. 신청기간 : 2002. 1. 20까지

바. 대상자 선정절차

- 사업대상자는 사업별 『농산물규격출하사업계획서』를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(2002. 1. 20까지)
 -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경작지 관할 농관원 지원에 제출(2002. 1. 20까지)
- 농관원 출장소장은 시·군농협지부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에 의거, 농관원 지원장에 보고(2002. 2. 28까지)
- 농관원 지원장은 시·도별 사업량, 소요예산액 등을 의거 본원에 보고(2002. 3. 15까지)
 - 지원장은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의 포장화우대품목사업 신청내역을 의거, 해당 출장소장에 통보(2002. 3. 15까지)
- 농관원 본원장은 2003년도 시·도별 사업계획에 의거, 농림부에 보고(2002. 3. 31까지)

사. 기 타

- 공영도매시장에 파렛트 출하시 파렛타이징 비용 지원 예정
 - 품목 및 지원단가 등은 추후 결정
- 기타 생산자조직 지원 품목의 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하여는 지원율을 점진적으로 축소



포장화우대품목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적용단가

품목	포장재종류	단량(kg)	포장재비	수확상차비	계
무	골판지상자	8~12	270	90	360
무	P.P대	15	40	140	180
무	P.E대	10~14(5개)	15	95	110
무	그물망	5~9(5개)	25	95	120
무	플라스틱상자	1매	-	150	150
배추	골판지상자	8~12	270	90	360
배추	그물망	10	20	90	110
배추	그물망	15	30	110	140
배추	P.E대	15~20	50	170	220
배추	플라스틱상자	1매	-	150	150
배추	P.E대	8~12(3~4포기)	20	105	125
배추	그물망	8~12(3~4포기)	25	105	130
마늘(난지)	골판지상자	5	80	50	130
마늘(난지)	골판지상자	10	180	100	280
마늘(난지)	골판지상자	15	230	100	330
마늘(난지)	골판지상자	20	250	150	400
마늘(한지)	그물망	3	10	30	40
마늘(한지)	그물망	10	20	100	120
마늘(난지)	그물망	10	20	100	120
마늘(난지)	그물망	20	20	150	170
마늘(한지, 난지)	그물망	1	10	20	30
마늘(난지)	그물망	3	10	30	40
마늘(난지)	그물망	4, 5	15	40	55
양배추	그물망	6~8	25	-	25
양배추	그물망	8~10	25	-	25
양배추	그물망	10~12	25	-	25
양배추	골판지상자	8~12	270	-	270



농산물규격출하사업세부추진지침 주요 내용

구분	2002년	2001년
○사업량	○우대품목 15백만매 ○산지유통전문조직 등 257백만매	○우대품목 11.5백만매 ○미흡품목 184백만매 ○디지털유통 77백만매
○사업비	○우대품목 : 국고 3,000백만원(30%) ○산지유통전문조직 등 : 국고 51,590백만원(30%)	○우대품목 : 국고 2,577백만원(30%) ○미흡품목 : 국고 46,920백만원(30%) ○디지털유통 : 국고 17,325백만원(30%)
○지원대상	○우대품목 : 생산자조직, 산지유통인등 ○산지유통전문조직 등 : 산지유통전문조직, 표준바코드표시조직, 공동계산조직, 친환경인증(표시)·품질인증, 조직·개인, 기타 생산자조직	○우대품목 :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자 ○미흡품목 : 생산자조직·개인 ○디지털유통 : 공동계산조직, 친환경·품질인증 조직·개인
○최저지원한도액	○기타 생산자조직 : 조직별 100만원 (국고)	○미흡품목 : 사업대상자별 100만원 (국고)
○대상품목	○우대품목 : 4개품목(무, 배추, 마늘, 양배추) ○기타 생산자조직 : 시·군별 9개품목 ○산지유통전문·표준바코드·공동계산조직 : 표준규격이 제정된 농산물 ○친환경인증(표시)·품질인증 : 인증(표시) 받은 농산물	○우대품목 : 3개품목(무, 배추, 마늘) ○미흡품목 : 18개(우선 9, 추가 9) ○디지털유통 - 공동계산조직 :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 - 친환경표시·품질인증 : 신고 및 인증 받은 품목
○대상 포장재	○골판지상자, 그물망(스티커포함), P.E대, P.P대, 지대	○골판지상자, 그물망(스티커포함), P.E대, P.P대, 지대, 스티로폼상자
○지원 우선순위	○우대품목 : 품목별 출하순서 ○산지유통전문조직 등 - 산지유통전문조직, 표준바코드, 공동계산조직, 친환경농산물(표시)인증·품질인증(조직, 개인 순), - 기타 생산자조직은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최우수, 우수, 일반조직 순	○우대품목 : 품목별 출하순서 ○디지털유통 : 공동계산조직, 품질인증·친환경인증(표시) 조직·개별농가 순 ○미흡품목 : 추가지원품목은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최우수, 우수, 일반조직 순
○생산자조직평가표	○ 5항목(시설규모, 상품고급화, 소비지점검결과, 품질관리활동, 특별가.감점), 19세항	○ 4항목(시설규모, 규격출하, 소비지점검결과, 품질관리활동), 11세항
○평가결과 등급별 지원량	○ 최우수(신청량의 100%), 우수(90~70%), 일반(50%이하)	○ 최우수(신청량의 100%), 우수(90~70%), 일반(30%이하)



구분	2002년	2001년
○포장재 제작협의	○사업자는 반드시 포장재 제작전에 농관원과 협의(포장화우대품목 생략 가능)	○사업자는 반드시 포장재 제작전에 농관원과 협의
○규격포장재확인서 발급	○ 삭제	○농관원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시한 포장재의 표시사항, 포장재치수 등이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확인서 발급
○포장재 단가	○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: 포장재비 30%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- 포장재용적별(길이*너비*높이) 사업 단가 ○우대품목 : 포장재별 단일단가	○미혼품목·디지털유통: 포장재비 30%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- 포장재용적별(길이*너비*높이) 사업 단가 ○우대품목 : 포장재별 단일단가
○수확상차비용지원	○우대품목(양배추 제외): 농관원에서 망/박스단위 지원	○우대품목: 도매시장법인 및 종합물류센터에서 망/박스단위 지원
○선별비용지원	○산지유통전문조직이 공동선별·출하한 물량에 대하여 선별비용 일부지원	-
○사업비 집행	○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지원 - 농관원은 사업자가 포장재를 제작하여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사업대상자가 제시한 『세금 계산서』와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확인후 자금 집행(통장 입금) ○우대품목 - 도매시장 및 종합물류센터, 대형유통업체, 김치공업체가 발행한 규격포장출하확인서 물량에 대하여 농관원에서 지급(통장입금)	○미혼품목, 디지털유통 : 시장·군수가 농관원의 표준규격확인서와 증빙서류 검토후 자금집행 ○우대품목 - 출하자가 규격포장하여 도매시장 해당법인에 상장하면 해당법인이 품목별 수량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, 관할 도매시장 관리자에게 지급요청(도매시장관리공사는 시·군과 자금정산)
○규격출하 지도·점검	○농협에서 지도 - 단, 산지유통전문조직, 친환경인증(표시), 품질인증 조직(농가)은 농관원이, 산지유통인회원은 지역산지연합회가 지도	○ 농협에서 지도 - 단, 디지털유통의 친환경·품질인증조직(개인)은 농관원이 지도
○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	○농관원은 농협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	○시·군은 농관원, 농협시·군지부장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

상기의 관련자료는 농림부(www.maf.go.kr)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www.naqs.go.kr) 홈페이지 "새소식"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